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6
----------	-----

2024. 4. 30.(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종갑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갑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내 산업현장에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4조)
-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명장 기술장려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가. (필요성 및 법적합성)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정비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의 정의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성과 체계적 적합성이 있음

나. (타당성) 명장 기술장려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인 바
조례 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 타 시도 규정과 비교하여 판단해
볼 때,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지정문화재” 를 “지정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과거에 같은 분야의 충청북도 명장, 도 지정문화재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p>	<p>제4조(명장의 자격요건)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지정무형유산</u> ----- -----</p>
<p>제6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u> 다만,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6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제></p>

관련법령 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명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충청북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명장 기술 장려금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기술 장려금 소요예산 증액
- 추계 기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16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16,000	24,000	30,000	40,000	50,000	160,000
충청북도 명장 육성지원금(기존)		16,000	24,000	30,000	30,000	30,000	130,000
충청북도 명장 육성지원금(추가)		-	-	-	10,000	20,000	30,000
재원 조달		16,000	24,000	30,000	40,000	50,000	160,000
의존 재원	소 계	16,000	24,000	30,000	30,000	30,000	130,000
	도비	-	-	-	10,000	20,000	30,000